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성호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토킹 잠정조치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사람(이하 ‘피부착자등’이라 한다)이 피해자 등 접근금지 위반 시,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5. 12. 23. 공포, 2026. 6. 2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피해자 등 보호조치(안 제13조의2 및 제23조의14제3항 신설)

- 1)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.
- 2)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피부착자의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함.

나. 피부착자등 수신자료의 제공(안 제14조의7, 제23조의17제2항 신설)
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에게 통지

할 때에는 피부착자등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.

다. 기타(안 제14조, 제23조의17제1항)

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2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 (피해자 등 보호조치)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(이하 “위치추적 관제센터”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,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수신자료의 사용)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(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

제14조의6 중 “열람 또는 조회한”을 “열람, 조회하거나 제공받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7(수신자료의 제공)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피부착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착자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23조의1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서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23조의1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”를 “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”로, “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”를 “대장(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록하고 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수신자료를

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13조의2 (피해자 등 보호조치)		
		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(이하 “위치추적 관제센터”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	
		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,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		
제14조(수신자료의 사용) 보호관		제14조(수신자료의 사용) 보호관		
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		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		
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(이하		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		
“위치추적 관제센터”라 한다)의		및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수		
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, 제3		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		
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		사실을 대장(전자적 형태로 바		
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		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	

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.
제14조의6(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)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<신 설>

제23조의14(피해자의 보호) ① · ② (생 략)
<신 설>

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
제14조의6(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) ----- 열람, 조회하거나 제공받은 -----

제14조의7(수신자료의 제공)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피부착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착자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제23조의14(피해자의 보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.

제23조의17(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)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톱킹 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 해야 한다.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-----

-----.

제23조의17(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) ① -----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-----

--- 대장(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록하고 관리---

②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장치 스톱킹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장치 스톱킹 행위자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치료처우과	
연 락 처	02-2110-3857